

광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단5385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허재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5. 12.

판 결 선 고 2021. 6. 2.

주 문

1. C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2017. 9.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채권

- 1) D 주식회사는 2014. 3. 14.경 C에게 5,000,000원을 대출기간 2년, 대출이자율 연 29.9%, 연체이자율 연 41.9%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 2) D 주식회사는 2016. 2. 25. E 주식회사에 C에 대한 대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E 주식회사는 2018. 5.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7628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3.경 C은 원고에게 6,878,407원 및 그 중 3,097,069원에 대하여 2019.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처분행위

- 1) C의 아버지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5. 21.경 사망하였고, 피고와 C, 소외 G, H, I, J, K와 망 L의 상속인인 M, N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 2)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7. 9. 25.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전남 보성군 O 답 1,570㎡를 G의 소유로, 전남 보성군 P 답 1,779㎡를 J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 3) 피고는 2017. 12. 19.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0.경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산 상태

C은 2017. 9. 25.경 Q에 합계 4,042,000원, R에 1,556,000원, S에 5,319,000원 및 437,000원, 광주지방법원에 5,459,000원, 광산세무서에 50,000,000원, T은행에 921,000원, U에 5,468,000원, V에 4,843,000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4,364,000원, E에 3,097,069원의 채무를 부담하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을 소유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W에 대한 신용정보조회회신,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고와 C 등 상속인들은 그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상속하게 되었고, 만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C이 보유하게 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2/17의 지분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유일한 적극재산이 되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상속재산에 관한 지분 중 이 사건 부동산의 2/17 지분을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하여 무상으로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의 자녀들을 양육한 점을 고려하여 그 양육비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의 상속 지분을 피고가 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C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이 있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2/17지분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의 재정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2/17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1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부동산 목록

1. 광주광역시 서구 대 124㎡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목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51.81㎡

부속건물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광 2.97㎡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문간 3.96㎡

3. 전라남도 화순군 임야 7269㎡

끝.

